

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년 8월 31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8월 3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30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(2006년 9월 12일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수도행정과장 마 길 남)

□ 제안이유

- 가정용 수도사용자 중에서 자가 검침 참여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정용 수도사용자 중에서 자가 검침 참여자에 대하여는 1회당 500원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37조제5항 신설)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	의	답	변
○ 가정용 수도요금의 월 납부금액은 평균 얼마인지 ?		○ 15,000원 정도임.	
○ 2개월에 1회 검침을 하고 500원을 감면하면 업무량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?		○ 검침원의 증원이 불가하여 자가검침제가 시행되면 검침업무의 축소, 사생활 침해 방지, 시정참여 등 적은 금액이지만 업무량의 축소와 효과가 있을것임.	
○ 신청을 전화, 인터넷을 활용하여 신청서를 받게되면 예상 참여율은 ?		○ 3% 예상하고 있으며 확대해 나갈것임.	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정용 수도요금의 월 납부금액은 평균 얼마인지 ? ○ 검침 시기는 ? ○ 본 시책의 호응도를 높여나갈수 있는 방안은 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5,000원 정도임. ○ 500T이상 사용 가구는 매월 검침을 하고 그 이하 사용가구는 격월로 하고 있음. ○ 홍보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고 각종 수시 회의, 교육시 홍보토록 할것이며 1년에 2회는 직접 검침토록 함.
--	---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 : 없 음
- 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 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- 격월에 한번 500원의 감면 혜택은 가계에 실질적 도움이 적을 것이며, 자료 전산입력 등 새로운 업무가 발생될 수 있어 실효성이 미흡함.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5호
의결 년월일	2006. 9. 15 (제130회)

제출년월일 : 2006. 8. 31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- 가정용 수도사용자 중에서 자가 검침 참여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가정용 수도사용자 중에서 자가 검침 참여자에 대하여는 1회당 500원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37조제5항 신설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가정용 수도사용자 중에서 자가 검침 참여자에 대하여는 1회당 500원을 감면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수도행정과
입 안 자	담당과장	마길남
	담당팀장	박환창
	담당자	손동운(☎320-3194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7조(요금등의 감면) ①~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37조(요금등의 감면) ①~④ (현행과 같음) <u>⑤가정용 수도사용자 중에서 자 가 검침 참여자에 대하여는 1회당 500원을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